

2020.01.08

『FTA 특례법』 일부 개정 안내

I. 개요

『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』(이하 "FTA 특례법") 조항 일부가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II. 주요사항

1. 개정 사유

-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
-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
- 원산지 증빙서류의 작성, 발급 관련 처벌 규정 명확화
- 『관세법』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

2. 개정 내용

□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조정 (§5조 제1항)

- 종전 : 협정관세의 세율이 『관세법』에 따른 적용 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『관세법』에 따른 적용 세율 우선 적용
- 개정 : 적용 세율이 같은 경우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

□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사유 추가 (§9조 제2항)

-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(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)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함

2020.01.08

『FTA 특례법』 일부 개정 안내

II. 주요사항

2. 개정 내용

- **경정청구의 의무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변경 (§14조 제3항, §46조 제2항)**
 - 종전 :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해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액 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
 - 개정 :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, 이 경우 세액 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

- 『관세법』의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(§36조)
 -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 반영

- **과실범 처벌 규정 명확화 (§44조 제3항)**
 -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, 발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납부
 -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, 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

- ◇ 『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』
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- ◇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<p><u>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·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「관세법」 제38조의2제1항·제2항, 제38조의3제2항 후단, 같은 조 제3항·제4항, 제46조,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(補正)을 신청하거나 경정(更正)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·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「관세법」 제38조의2제1항·제2항,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46조,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.</p>
<p>제14조(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) ① (생략)</p> <p>②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(過不足)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·세액보정 신청,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액정정, 세액보정,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「관세법」 제38조,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4조(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</p> <p>부족- - - - -</p> <p>- 세관장에게 세액정정·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- - - - - . <후단 삭제></p> <p>③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, 세액보정,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「관세법」 제38조,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.</p>
<p>제35조(협정관세의 적용제한)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p>	<p>제35조(협정관세의 적용제한) ① - - - - -</p>

<p>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<u>가산세</u>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<신 설> <신 설></p> <p>③ (생 략) <신 설>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<u>가산세</u>----- ----- -----</p> <p>1.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</p> <p>2.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(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관세법」 제4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
<p>제44조(벌칙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<u>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44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과실로 협정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6조(과태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<u>세액정정·세액보정 신청,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</u>를 하지 아니한 자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4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신청 또는 수정신고</u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